

정관

소관부서 : 기획부/(T: 3786-7754)

2012. 03. 02 제정 2012. 09. 21 개정 2013. 6. 13. 개정 2016. 10.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호는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ongHyup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2.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3. 「보험업법」이나 다른 법령 등 관계법규(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상 허용된 사업
4. 금융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수리를 받은 기타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관계법규나 이 정관, 기타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fir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 및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4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일천만(1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의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주권) ①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그 밖의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주주총회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주주총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우선주식을 존속기간이 있는 것으로 정할지 여부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11조(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신규로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8.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한 신주배정의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주주가 신수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성명·주소 등 신고의무)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각각의 법정대리인(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등은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할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할 사항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부실신고 또는 지연신고 됨으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하는 제반 손해와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8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업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후순위 사채(社債) 등 각종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시에는 이사회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채의 종류와 액수, 기타 사채 발행의 제반 세부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구분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관계법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소집방법에 관하여 「보험업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 등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규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0조(이사의 수)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2016. 10. 20. 개정)

제31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41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6. 10. 20. 개정)**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관계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자
2. 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016. 10. 20. 개정)**

제3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6년(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간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 할 수 없다. **(2016. 10. 20.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제30조에서 정한 이사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0조에서 정한 이사 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32조를 준용하며 취임일부부터 기산한다.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6. 10. 20. 개정)**

제35조(이사의 직무와 권한)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관계법규와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관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보험업법」, 「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2016. 10. 20. 개정)**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7조의2(이사회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16. 10. 20. 본조 신설)

제38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10. 20. 개정)

제39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규 또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2016. 10. 20. 개정)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외에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각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대하여는 관계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2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감사위원회 위원(상근감사위원 포함. 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위원은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등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6. 10. 20. 개정)

제42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는 관계법규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계법규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⑨ 감사위원회가 한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3조(감사의 수와 선임) (2013. 6. 13. 삭제)

제44조(감사의 임기) (2013. 6. 13. 삭제)

제45조(감사의 보선) (2013. 6. 13. 삭제)

제46조(감사의 직무) (2013. 6. 13. 삭제)

제47조(감사록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2013. 6. 13. 삭제)

제7장 계산

제49조(사업연도)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자에 장부를 폐쇄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단, 회사가 상법시행령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① 회사는 제 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제 지급금과 차년도에 이월할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 중 계약자배당준비금은 해당 보험계약 및 사업방법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히 계산하여 이를 적립한다.
- ③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

2. 기타의 법정준비금 또는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잉여금

6. 전 각 호 외에 기타 필요한 처분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금 등의 계산방법과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분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조(주식의 소각) (2012.9.21.삭제)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이하 “중간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금전으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간배당에 따른 배당금은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57조(보칙) 이 정관의 규정내용이 관계법규 중 강행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하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나 「상법」 기타 관계법규와 관계사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이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정관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는 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 정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의 선임) 이 정관 제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 정관 제42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직원의 근로여건에 관한 특례)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고용승계 하는 직원에 관하여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근로여건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할법인) 아래 분할법인은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2년 2월 21일 기명날인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회장 최 원 병 (인)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이후 최초의 사외이사 선임) 제3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